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3호

2021년 7월

전문가 기고

ESG경영 정착을 위한 ESG생태계 구성원의 역할

주요 이슈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ESG 동향

TCFD와 TNFD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개발

EU Taxonomy 법제화와 Social Taxonomy

주요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 안착을 위한 ESG생태계 구성원의 역할



이재혁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기회 혹은 위협이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경영환경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했던 단어가 일상의 용어로 자리잡았지만 아마존을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몇몇 기업들은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듯 지속가능성을 염려하는 시점에 기업들에게 또다른 경영환경의 변화로 다가온 것이 ESG이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대변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해보는 것이다. ESG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금년 들어 주요 대기업 신년사에서 언급되면서 압축적으로 논의되어 온 느낌이다. ESG가 기업경영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ESG생태계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금년 1월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공시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시의무화와 관련된 시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 ESG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기업이 공시와 관련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너무 늦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공시의무화 '시기'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공시에 포함시킬 '내용'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투자들이 많은 기업 보고서를 꼼꼼

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아마 투자자들은 해당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외부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의무화 시기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ESG활동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ESG생태계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입장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평가지표에 대한 중복경쟁이 벌어진다면 '기업의 공시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달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SG경영은 대기업만의 점유물이 아니다. 가치사슬관점에서 협력업체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 경우, 대기업의 ESG경영은 미완성에 그칠 뿐이다. ESG는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더 시급한 이슈이다. 협력업체의 ESG내재화 여부가 원청업체와의 파트너십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ESG내재화는 여전히 쉽지 않다. 중소기업의 ESG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ESG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ESG경영을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진정성과 정당성이 소비자와 공유된다면 ESG경영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특히 MZ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층의 ESG에 대한 관심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G경영의 핵심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ESG경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 뿐만 아니라 ESG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집단지성이 절실한 이유이다.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민경희 연구위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의무화 일정을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① 글로벌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ESG 정보 공개 의무화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EU는 2014년 '비재무 정보의 공개에 관한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제정하고 비재무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2018년부터 NFRD가 시행되면서 근로자수와 자산 규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장 기업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대우, 인권, 반부패, 이사회 다양성 등과 관련한 기업의 정책과 성과지표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U는 지난 3월에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도입하고 역내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들에게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기업 결정시 ESG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고, ESG를 투자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U는 규제 도입을 통해 그린워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U 외의 지역에서도 ESG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중국은 2020년부터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2000년대 초반 연기금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한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TCFD 권고안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하고 ESG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기관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정보공개 요구가 늘어나면서 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국가들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정보 공개 의무화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 EU의 비재무 정보 공개 지침(NFRD)은 EU 지역에 현지 법인이나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도 대상이 된다.

EU의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 동향

	주요 내용
NFRD	비재무 정보의 공개에 관한 지침(2018년 부터 시행) -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중 자산 2천만 유로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기업 대상 -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근로자 대우, 인권, 반부패, 이사회 다양성 등 공시 의무화
SFDR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2021년 부터 시행) -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시장 참가자 및 자문사들 대상 - 피투자기업의 기후·환경, 사회·근로자 관련 항목, 금융상품의 환경·사회 관련 영향 등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제금융센터

② 국내 정보공개 의무화 일정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표적 ESG 보고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이나 사회 이슈 관련 기업의 전략이나 개선노력 등이 포함되는 보고서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까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정보공개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에는 의무화 대상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기업들은 거래소가 제시하는 핵심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핵심원칙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및 구성, 감사기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ESG 정보 공개 관련 규제의 강화는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EU 지역 등에서 규제 및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 공개 의무화 일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SG 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산 2조원 이상	2019	-
자산 1조원 이상	2022	-
자산 5천억원 이상	2024	-
-	2025	일정규모 이상 기업
전체 코스피 상장사	2026	-
-	2030	전체 코스피 상장사

※ 자료 : 금융위원회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배두현 선임

주요국들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GRI 기준, SASB 기준, TCFD 권고안의 정보공개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 글로벌 표준화 기관 및 정보공개 기준

전세계 기업 및 기관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고, UN PRI 등 국제기구들이 활용을 권고하는 대표적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는 GRI, SASB, TCFD 등이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기준

GRI는 1997년 UNEP(유엔환경계획) 등의 주도로 설립된 기구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GRI Standards는 전세계 기업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정보 공개 기준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100여개 국가와 15,477개 기업·기관이 GRI를 지속 가능 보고서 작성시 활용하고 있다.

GRI는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환경·사회 분야에서의 핵심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적 성과, 조달 관행, 반부패, 경쟁저해행위 등을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를 제안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에너지 및 용수 사용, 온실가스 배출,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등과 관련한 지표이고, 사회분야에서는 고

용 및 노사관계, 산업안전, 차별금지 등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기준

SASB는 투자자들에게 비교 가능한 비재무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보공개 표준화 기관이다. 2018년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보고 표준인 SASB Standards를 발표했다.

SASB Standards는 GRI Standards와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보공개 기준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928여개 기업이 SASB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840여개 기업이 SASB 기준을 활용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SASB Standards는 지배구조, 사업모델, 환경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등과 관련한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대성(materiality) 원칙에 따라 해당 산업별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 Index

경제(6개 주제)	환경(8개 주제)	사회(19개 주제)
① 경제성과 -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등 ② 시장지위 - 최저임금 대비 초임 비율 등 ③ 간접 경제적 영향 ④ 조달관행 ⑤ 반부패 ⑥ 경쟁저해행위	① 원재료 ② 에너지 ③ 용수(취수·소비·방류 등) ④ 생물다양성 ⑤ 배출(온실가스 등) ⑥ 폐수 및 폐기물 ⑦ 환경적 컴플라이언스 ⑧ 공급업체 환경평가	① 고용 ② 노사관계 ③ 보건 및 산업안전 ④ 교육 및 훈련 ⑤ 다양성 및 기회균등 ⑥ 차별금지 ⑦ 단체교섭의 자유 ⑧ 아동노동 등

※ 출처 :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② 정보공개 표준화 동향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

TCFD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의 공개를 위해 2015년 만들어진 조직이다. TCFD는 정보 공개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TCFD는 2017년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TCFD 권고안은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평가를 위한 지표와 감축목표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78개국에서 2,109개 기업 및 기관에서 TCFD 권고안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UN PRI는 서명기관들에게 TCFD 권고안 채택을 의무화했고, 영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도 TCFD 권고안 기준으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SG 정보공개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투자자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여러 기관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과도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성과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공개 기준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다. SASB와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는 지난해 공통 표준 제정에 합의했고 최근에는 조직도 통합했다. GRI, SASB, IIRC,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 5개 기관도 공통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도 지난해 정보공개 표준화 등을 목표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를 발표했다. WEF가 발표한 지표는 GRI, SASB, TCFD 등의 정보공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ESG 정보 공개 표준 제정을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지배구조 원칙 (Principles of Governance)	지구 (Planet)	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① 기업의 목적 ② 지배구조의 질 ③ 이해관계자 관여 ④ 윤리적 행동 - 반부패 ⑤ 윤리적 행동 - 보고 메커니즘 ⑥ 리스크·기회 관리	① 기후변화 - 온실가스 배출 등 ② 기후변화 - TCFD 실행 ③ 자연손실 - 토지 사용 등 ④ 물 가용성 - 물소비 등	① 다양성 및 포용성 - 연령·성별 비율 ② 임금 평등 ③ 보수 수준 ④ 아동·강제노동 ⑤ 건강과 웰빙 - 건강 및 안전 ⑥ 미래 기술 훈련	① 고용 및 부의 창출 - 고용률 등 ② 고용 및 부의 창출 - 경제적 기여 ③ 고용 및 부의 창출 - 재무적 투자 ④ 상품서비스 혁신 ⑤ 공동체와 사회 활력

※ 자료 : WEF

TCFD와 TNFD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개발



김예나 연구원

지난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NFD가 공식 출범했다. 환경관련 재무정보 공개 요구가 기후변화에서 자연자본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① TCFD와 TNFD

환경관련 재무정보 공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든 TCFD가 주도해 왔다. TCFD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회와 관련한 재무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경영전략 및 리스크 관리에 반영할 것을 주문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는 TCFD의 연장선상에서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자연자본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훼손과 생태계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TNFD가 정의하는 자연자본은 ▲ 살아있는 (생물적) 자연 ▲ 물과 토양, 공기 ▲ 광물 고갈 등을 의미한다. TCFD가 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면 TNFD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와 각종 규제 및 사회적 비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

② TNFD의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개발 동향

TNFD는 시범도입 과정을 거쳐 2023년까지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프레임워크 개발에는 UNEP FI, UNDP, Global Canopy, WWF 등의 국제 기구 및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TNFD의 프레임워크는 TCFD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 공시를 피하기 위해 TCFD를 바탕으로 하고, TCFD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 지배구조 ▲ 경영전략 ▲ 리스크 관리 ▲ 지표 및 목표 등의 분야에서 자연자본 관련 공시 항목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TNFD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더라도 수년 내에 의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TCF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TCFD 기준이 의무화되고 있는 선례로 볼 때 규제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TCFD 권고안 주요내용

영역	정보공시 주요 항목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 이사회의 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 등
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사업, 경영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경영전략의 유연성 등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파악 및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등
지표와 목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리스크 등

※ 자료 : TCFD, KDB 산업은행

EU Taxonomy 법제화와 Social Taxonomy



이진 연구원

지난 4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에 EU Taxonomy 관련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녹색 분류체계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EU는 사회 관련 지속가능성의 판단 기준인 Social Taxonomy도 준비하고 있다.

① Green Taxonomy(녹색 분류체계)

EU Taxonomy는 친환경 산업이나 금융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Green Taxonomy의 종류 중 하나이다. EU 집행위는 Taxonomy를 통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EU Taxonomy 규정은 6가지 환경 목표와 4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판단기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판단기준으로는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 Taxonomy를 참고해서 한국형 분류체계(K-Taxonomy)를 준비 중이다. 그린뉴딜의 추진,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녹색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K-Taxonomy가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 Social Taxonomy(사회 분류체계)

EU는 환경 관련 이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준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EU 집행위 자문기구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주도로 Social Taxonomy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Social Taxonomy가 대두된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사회적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환경 문제 외에 사회적 이슈로 인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에 의하면 Social Taxonomy의 핵심 구조는 인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노동자·소비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반부패 및 납세 전략의 적절성 등이 판단기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녹색 및 사회 분류체계(Taxonomy)가 구체화되면서 환경 측면과 사회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들도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 Taxonomy 규정 주요내용

경제(6개 주제)	사회(19개 주제)
①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o No Significant Harm, DNSH)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등 ④ 경제활동별 기술 선별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활동 식별 및 개발 등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SG 통계 지표

2021년 6월말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8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녹색채권	3	21	31	43	55	69	85	94	105
사회적채권	1	178	471	488	505	538	572	599	624
지속가능채권	1	8	44	46	58	69	93	113	124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잔액

(단위 : 천억 원)

	2018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녹색채권	6	21	30	43	57	72	90	103	113
사회적채권	3	246	736	766	786	847	918	979	1,011
지속가능채권	4	21	54	56	74	80	99	105	120

2. ESG 평가

서스틴베스트 연도별 등급 분포

(단위 : 개)

연도/등급	AA	A	BB	B	C	D	E	총 기업 수
'18	56	137	310	202	190	61	15	971
'19	57	139	283	209	241	56	22	1,007
'20	80	164	288	195	198	56	18	999

* 2021년 1,2차 등급 조정 결과 반영

3. 기타 통계

지속가능성 보고서 연도별 발간 현황

(단위 : 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적 발간	109	111	115	108	115	117	122	120
최초 발간	21	16	17	14	18	16	13	18

2021년 ESG 뉴스레터 주요 이슈 목록

5월

|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6월

| 주요국 기후변화 관련 규제·정책 동향
|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계획

7월

|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8월

| 글로벌 ESG 평가 기준 및 특징
| 한국의 ESG 평가 및 특징

9월

| ESG 경영 전략
| Supply chain과 ESG

10월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11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 스톡홀름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12월

|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민경희 연구위원

T. (02)6050-3137 | E. kmin@korcham.net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배두현 선임

T. (02)6050-3142 | E. doohy@korcham.net

TCFD와 TNFD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개발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orcham.net

EU Taxonomy 법제화와 Social Taxonomy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김민성 연구원

T. (02)6050-3139 | E. mskim62@korcham.net